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32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3

I. 개요

1.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63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27.

(3) 회 부 일 : 2026. 4.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도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

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8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김상훈의원안)

현 행	김상훈 의원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특례(제91조의18)	☐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특례(제91조의28) 신설
○	○ 가입 요건 - 19세 미만 거주자(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외) ○ 과세 특례 - 주니어 ISA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 거주자가 주니어 ISA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 납입한도: 연간 360만원, 총한도 6,840만원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 후에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

* 김상훈의원안 2026. 4. 27. 발의(의안번호 1863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이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으로서,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출시되었음.

[ISA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 15세 이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계약형태	투자중개형(직접 투자형), 일임형(위탁 투자형), 신탁형(운용 지시형)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 채권 등
의무가입기간	3년(계약기간 연장,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 허용),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허용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총 1억원), 한도 미충족시 5년간 이월납입 허용
세제혜택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및 분리과세 9%, 손익통산(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ISA는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 등 3가지 종류로 구분¹⁾되는데,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예금 등 미포함)하는 방식, 신탁형 ISA는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예금·펀드 등에 투자(국내 주식 등 미포함)하는 방식, 일임형 ISA는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투자를 위임하는 방식임.

[ISA의 종류]

구 분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투자가능재산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예금, ETF, 펀드 등	ETF, 펀드 등
투자선택여부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증권사가 포트폴리오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융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6%~45% 종합과세)이 적용되나,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였는데,

제도 도입 당시 비과세 한도는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²⁾는 250만원, 그 밖의 가입자는 200만원이었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 하였음.

이후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19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고,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제도가 영구화되었음.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ISA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

[ISA 제도 및 과세특례 연혁]

구 분	2015년 개정	2017년 개정	2020년 개정
가입대상	19세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자		19세이상인 자
비과세한도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 250만원 기타 200만원	소득 요건 충족 거주자·농어민: 400만원 기타 200만원	
일몰기한	~2018년	~2021년	제도 영구화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소득요건 충족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거주자

2) 소득요건 충족 거주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거주자

- 개정안은 19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하는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① 주니어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② 거주자가 주니어 ISA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ISA 및 주니어 ISA 비교]

구분	ISA	주니어 ISA
가입 대상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 15세 이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19세 미만 거주자(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제외) ※ 19세가 되는 경우 주니어 ISA 가입에서 ISA 가입으로 전환
운용 자산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국내 상장주식, 채권 등	· 국내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
의무 가입 기간	·3년(계약기간 연장,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 허용),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허용	·19세 되는 날까지 계좌 유지 ·납입원금 내 중도인출 허용
납입 한도	·연간 2천만원(총 1억원),	·연간 360만원(총 6,840만원)
세제 혜택	·비과세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및 분리과세 9%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거주자의 주니어 ISA 납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자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³⁾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미성년 시기에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 시,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 등록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첫째, 주니어 ISA 과세특례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거주자의 주니어 ISA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구조임. 그러나,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원금 인출이 제한되는 주니어 ISA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연 최대 360만원)을 장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가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 여력이 있는 가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계의 경우 가계소득보다 가계지출이 많아 흑자액⁴⁾이 마이너스(-51만 9천원)인 상황이며, 2분위 가구 역시 가계지출 비중을 고려하면 주니어 ISA 납입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2026. 1/4)]

(단위: 천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계소득	1,170	2,799	4,442	6,611	12,378
가계지출	1,689	2,548	3,623	5,047	8,298
소비지출	1,457	2,058	2,768	3,674	5,566
비소비지출 ⁵⁾	232	491	855	1,372	2,733
처분가능소득 ⁶⁾	938	2,309	3,588	5,239	9,645
흑자액 ⁷⁾	-519	251	819	1,564	4,080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6.5.28.

4)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저축이나 자산 구입,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처분가능소득 - 소비지출), 국가데이터처

5)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이전지출 등

6) 처분가능소득 = 소득-비소비지출

7)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또한, ISA 가입자의 평균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기준 ISA에 가입한 1계좌당 평균 투자금액은 632만원⁸⁾이고, 누적 투자금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수는 약 5만계좌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계좌의 상당수가 현행 납입한도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연간 360만원 한도의 주니어 ISA 신설에 따른 세제 혜택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ISA 투자금액 수준별 인원]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계좌수(천좌)	비중	구 분	계좌수(천좌)	비중
1만원 이하	4,221	55.2%	1천만원 ~ 2천만원	818	10.7%
1만원 ~ 10만원	337	4.4%	2천만원 ~ 4천만원	421	5.5%
10만원 ~ 3백만원	974	12.7%	4천만원 ~ 6천만원	146	1.9%
3백만원 ~ 5백만원	237	3.1%	6천만원 ~ 8천만원	64	0.8%
5백만원 ~ 1천만원	382	5.0%	8천만원 초과	51	0.7%
합계	7,652	100%			

자료: 금융투자협회

8)

[ISA 가입자 및 투자현황]

(2025. 12월말 기준)

구 분	신탁형	일입형	중개형	합 계
가입계좌(만좌, A)	92.0	13.9	659.2	765.2
전체 투자금액(억원, B)	152,666	13,087	317,938	483,691
1계좌당 투자금액(만원, B/A)	1,659	944	482	632

자료: 금융투자협회

□ 둘째, 주니어 ISA 과세특례는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체계를 우회하여, 자산 계층 간 부의 대물림을 확산시키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됨⁹⁾.

그러나, 개정안은 주니어 ISA 납입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현행 기본 공제 외에 최대 6,840만원의 추가적인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실질적으로 상향함으로써,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고 부의 대물림을 확산시키며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150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10) 재정경제부는 주니어 ISA가 고소득 부모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어 과세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 부동의
미성년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아이저렴펀드(금년 금융위 연구용역 진행중) 방안 확정 후 연계 검토하겠다는 입장